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7887
----------	-------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교육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가. 상정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524호	백승아의원	2025. 11. 25.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6. 2. 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720호	김대식의원	2024. 10. 16.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2024. 11. 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나.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26.)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6. 3. 10.)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AI·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석·박사급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사내대학은 전문학사, 학사 과정까지만 운영이 가능하고, 사내대학원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한시 규정으로 운영되어 제도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제도는 사내대학·대학원 설치 기업과 동종·유관 업종 재직자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융복합 인재 수요가 커지는 환경에서 다양한 중소기업 재직자에게까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규정하고, 재직자뿐 아니라 채용후보자와 중소기업 재직자에게까지 입학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융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사내대학형태의”를 “사내대학·대학원형태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를 “전문대학, 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와”로, “평생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를 “사내대학·대학원형태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종업원”을 각각 “종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를 각각 “사내대학·대학원형태의”로 한다.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사내대학·대학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직무 교육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2조(<u>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 시설</u>)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u>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1. ~ 3. (생략)</p> <p>② <u>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u></p> <p>1.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에 고용된 <u>종업원</u></p>	<p>제32조(<u>사내대학·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u>) ① ----- ----- ----- -----<u>전문대학, 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와</u>----- -----<u>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이라 한다)</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u>사내대학·대학원형태의</u>----- ----- ----- -----.</p> <p>1. ----- ----- -----<u>종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u></p>

2.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에  
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  
원

2. -----  
-----  
-----종업  
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

3.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  
는 부품·재료 공급 등을 통  
하여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  
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  
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

3. -----  
-----  
-----  
-----  
-----  
-----  
-----종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채용후보자

4.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동종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4. -----  
-----  
-----  
-----  
-----종업원 및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  
자

5. 산업별 협의체의 해당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  
체의 종업원

5. -----  
-----  
-----종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

<신 설>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사내대학·

③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학점제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직무 교육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③ 사내대학·대학원형태의---  
-----  
-----  
-----.

④ 사내대학·대학원형태의---  
-----  
-----  
-----.

⑤ 사내대학·대학원형태의---  
-----  
-----  
-----  
-----.